

『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1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장미경, 강승수, 김낙관, 김춘남, 안주찬, 양진오,
장세구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미 경 의원

나. 제안이유

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
보호하고,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시장 등의 책무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(안 제4조 ~ 제5조)
- 대기측정망 설치(안 제6조)
-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재정지원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, 제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11. 11. ~ 11. 18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정

○ 본 「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은,

- 최근 심각히 대두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,
-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환경부에서 시행한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, 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